

『國朝五禮儀』 內喪在先 의례의 성격과 의미

김윤정*

〈차 례〉

1. 머리말
2. 『국조오례의』 내상재선 규정의 성격
3. 내상재선 복제의 성립과 적용
4. 맺음말

[국문초록]

『국조오례의』의 내상재선 의례는 세자의 父在爲母服인 齊衰杖期를 기준으로 거행되었다. 『국조오례의』에는 왕의 복제와 행례에 대한 규정이 없었지만, 아버지이자 국왕이라는 尊者의 위상은 내상재선 의례에 중요한 전제가 되었다. 왕은 공식적으로 상례 절차를 결정했고, 왕의 ‘服盡’을 기준으로 백관과 내시 등의 상복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었다. 또한 세자가 주관하는 혼전 의례에서 왕과 세자의 의례적 조율이 강조되었다. 왕의 존재는 내상재선의 처등적 규정을 생산하는 기준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상재선의 主喪은 세자로 간주되었다.

내상재선의 혼전 의례는 主喪인 세자의 복제에 따라 練祭 - 祥祭 - 禫祭 - 再期の 절차를 거치면서, 흉례에서 길례로 변화되었다. 15개월 담제 후 내상재선의 혼전은 飲福과 음악이 허용되는 길례의 공간이었지만, 심상삼년을 행하는 세자의 존재로 인해 재기까지는 흉례의 의미가 유지되었다. 재기 이후부터는 祔廟를 기다리는 온전한 길례의 공간으로 간주되었다. 한편, 세자없는 내상재선의 혼전 의례는 세자의 행례와 무관하게 자취장기를 원칙으로 운영되었다. 그럼에도 세자의 부재로 인해, 담제 이후의 혼전은 길례의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국조오례의』 내상재선 의례의 기준이 되었던 세자의 복제는, 원경왕후상의 자취장기복, 소헌왕후상의 즐곡변제와 심상복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었다. 이러한 세자복제는 조선전기 고례와 주자 예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음을 보여주지만, 조선후기에는 새로운 예학적 비판

* 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에 직면했다. 18세기에는 보편적 유교윤리인 효를 바탕으로 세자의 心喪이 강조되면서, 세자의 無揚赤色黑衣가 淡黑袍로 변경되었고 훈전의례에서의 음악사용은 중단되었다.

또한 『국조오례의』의 내상재선 시 백관복제는 역월제가 아닌 졸곡변제를 적용하는 13개월의 기년복으로 결정되었다. 소헌왕후상의 백관복제와 달리, 백관은 기년복을 마친 후 길복을 입었고, 담제에는 배제하지 않았다. 이러한 규정은 내상과 내상재선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백관의 왕비복은 모두 기년복이지만, 백관은 기년 후에도 왕이 주관하는 내상 의례에 陪祭했다. 반면 세자가 주관하는 내상재선의 경우, 백관은 기년복을 마친 후에 배제하지 않았고 음악을 사용할 수 있었다.

[주제어] 『國朝五禮儀』, 內喪在先, 魂殿, 服制, 心喪

1. 머리말

조선시대 국가의례에서 大喪은 왕의 상례, 內喪은 왕비의 상례를 의미한다. 대상에서는 왕의 사망으로 인한 왕위계승 절차가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조선초기에는 嗣位 의례가 포함되지 않은 上王의 상례 역시 대상으로 간주되었지만, 상왕의 대상은 태조, 정종, 태종의 국상에만 해당되었다.¹⁾ 반면, 왕비는 왕대비, 혹은 대왕대비의 지위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왕의 생존 시 왕비로 사망하는 사례는 대상이 대상보다 먼저 있었다는 의미에서 ‘內喪在先’으로 구분되었고, 조선시대를 통틀어 10건에 불과했다. 내상재선은 왕의 삼년상이 아니었으므로, 왕은 내상재선에서 적극적으로 국상의례의 정비와 변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

왕비는 왕의 正妻로서, 자손의 유무나 왕위계승자와의 혈연적 관계와는 무관하게 그 지위를 인정받았다. 남편인 왕의 사후 왕비는 왕실의 웃어른이 되었고, 사망 시 상례는 왕비의 內喪으로 거행되었다. 혈연관계와 상관없이 대상에 대한 왕의 상복은 자최삼년이었으므로, 성종은 조모인 貞熹王后에게, 숙종은 증조모인 莊烈王后에게 자최삼년복을 입었다. 반면, 내상재선의 경우 왕의 妻喪이자, 세자의 父在爲母喪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세자의 상복은 자최삼년이 아닌 자최기년으로 정해졌다. 왕비라는 지위는 동일했지만, 사망하는

1) 안희재, 『朝鮮時代 國喪儀禮 研究 : 國王國葬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논문, 2010, 257쪽.

시점에 따라 내상과 내상재선으로 구분되었고 의례의 절차와 성격에도 중요한 차이가 발생했다.

내상재선에 대한 연구는 조선후기 왕의 상복과 主喪의 변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임진왜란 직후 치러진 선조비 의인왕후 국상에 주목하여, 전쟁으로 참고할 전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오히려 禮經의 원칙이 강조되는 양상을 분석했다. 의인왕후상의 내상재선 논의를 시작으로, 18세기 『국조상례보편』에서는 왕의 상복이 喪杖을 짚는 자취기년[齊衰杖期]의 형식으로 완성되었고, 세자의 행례를 攝行으로 간주하는 규정들이 확립되었다고 보았다.²⁾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조선전기 내상재선 의례의 성립 과정과 그 성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조선전기 국상의례에 대한 연구는 유교적 국가의례의 정비과정에서 주자 성리학에 따른 상복제도의 수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³⁾ 이후 실제 의례의 시행이나 세부 내용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실록에 수록된 儀註를 중심으로 개별 국상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었다.⁴⁾ 내상재선인 소헌왕후 국상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지만, 내상재선의 의례적 특징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내상재선의 차등적 服制를 규명하지 않았고, 내상재선 혼전의례의 독특한 성격을 소헌왕후 국상에 국한된 것으로 설명했다.⁵⁾ 내상재선은 大喪과 다를 뿐만 아니라 內喪과도 차이가 있었고, 의례의 특성인 ‘차등과 구분’의 원리를 명확히 드러내야 하는 매우 정교한 문제였다.

이 글에서는 조선전기 태종비 神德王后, 세종비 昭憲王后, 성종비 恭惠王

-
- 2) 김윤정, 『宣祖代 懿仁王后 國恤의 성격과 의미』, 『규장각』 50,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17; 김윤정, 『英祖代 貞聖王后 國恤의 성격과 의미』, 『서울과 역사』 98, 서울역사편찬원, 2018(a); 김윤정, 『인조대 인열왕후 국훈의 절차와 의미』, 『장서각』 40,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b); 김윤정, 『조선후기 內喪在先 의례의 변화와 의미-仁敬王后 國恤을 중심으로-』, 『규장각』 53,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18(c).
- 3) 지두환, 『朝鮮前期 儀禮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정경희, 『朝鮮前期 禮制·禮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0.
- 4) 안희재, 앞의 논문; 양정현, 『조선 초기 원경왕후 喪葬禮 의식과 그 특징』, 『역사민속학』 45, 한국역사민속학회, 2014; 석창진, 『조선 世宗妃 昭憲王后 國喪儀禮와 그 의미』, 『역사민속학』 45, 한국역사민속학회, 2014; 조용철, 『朝鮮 世祖代 懿敬世子 喪葬禮 구성과 특징』, 『역사민속학』 45, 한국역사민속학회, 2014; 이지훈, 『조선 세종 국상의 의식 구성과 진행』, 『역사민속학』 45, 한국역사민속학회, 2014.
- 5) 석창진, 앞의 논문, 112~117쪽.

后, 중종비 章敬王后의 내상재선과 상왕인 태종 생존 시에 승하한 元敬王后 喪을 중심으로, 『국조오례의』의 내상재선 규정이 성립되고 적용되는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국조오례의』 내상재선 규정을 분석하여, 왕의 처상이자 세자의 부재위모상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살펴보았다. 왕은 내상재선 절차의 결정권자이자, 세자와 백관 등의 의례를 제약하는 위상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내상재선은 세자의 복제를 기준으로 진행되었고, 세자가 主喪의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내상재선의 혼전은 禫祭 이후에도 납편인 왕의 사후 삼년상을 마칠 때까지 유지되었으므로, 흥례의 공간에서 길례의 공간으로 전이되는 독특한 성격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국조오례의』의 세자와 종친·문무백관(이하 백관)의 복제가 성립되는 과정과 의미를 검토하였다. 세자복은 소현왕후상에서 자최장기-심상삼년에 졸곡변제를 적용하는 형태로 정비되었고, 『국조오례의』로 계승되었다. 자최기년인 백관복의 경우, 소현왕후상에서 졸곡변제가 적용되었고 『국조오례의』에서는 내상과 내상재선을 차등화하는 형태로 완성되었다.

이러한 내상재선 의례의 성립 과정은 조선전기 고례와 주자예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고, 유교적인 국상의례가 정비되었음을 보여준다. 15세기 『국조오례의』의 완성은 조선전기 유교적 국가의례의 성립이자, 조선전기 예학 발전의 지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조선후기 예학의 시각에서는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 『국조오례의』 내상재선 규정의 예학적 가치와 한계를 규명함으로써, 조선시대 국상의례의 변화를 거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본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조오례의』 내상재선 규정의 성격

1) 내상재선 규정의 내용과 성격

『국조오례의』의 국상 관련 68항목 중 17항목에 내상재선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⁶⁾ 내상재선은 왕비의 상례라는 특성상, 왕의 遺敎를 받는 ‘國恤顧命’, 세자의 즉위식인 ‘嗣位’와 ‘頒敎書’, 그리고 중국에 訃告하고 諡號를 받는 절차와 관련된 6항목⁷⁾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또한 내외의 구분을 강조하여, 왕비의 殯殿에 奠을 올리거나 고하는 의례는 女官이 담당했다. 내상재선은 이러한 일반적인 내상의 규정을 따랐지만, 내상과의 차별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을 경우 ‘내상재선’으로 특정되었다.

내상재선은 왕의 생존 시 발생한 내상의 차별적 성격을 규정한 것이었다. 따라서 남편인 왕의 존재는 내상재선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국조오례의』에는 내상재선 시 왕의 喪服이나 行禮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 내상재선의 服制는 세자를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⁸⁾ 세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成服을 거행했고 산릉에 陪行한 후 혼전의례를 주관하였다.⁹⁾ 그러나 내상재선 규정은 尊者인 왕을 기준으로, 왕과 세자의 차등적인 위상을 구현하고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생존해 있는 왕의 妻喪으로서, 왕의 명령에 따라 국상의례가 진행되었다. (1) 국상 시 관리와 백성이 지키고 행해야 할 일들을 규정한 ‘戒令’ 항목에서, 내상재선 시 예조는 모든 喪事에 관한 일을 왕에게 啓聞하였다.(①) 대상과 내상의 경우, 예조는 의정부에 보고하여 국상 절차를 진행했는데, 삼년상을 당해 슬픔을 주체하기 어려운 세자와 왕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다.

6) 18세기 『국조상례보편』의 경우, 73항목 중 35항목에 내상재선이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조선 후기 예학의 발전에 따라 내상재선 규정이 보다 정교화 되었음을 의미한다. 『국조오례의』와 『국조상례보편』 내상재선 항목의 비교는 별고에서 다룰 예정이다.

7) 『國朝五禮儀』 권7의 ‘告訃請諡請承襲’과 권8의 ‘迎賜諡祭及弔膊儀’ ‘賜膊儀’ ‘賜諡儀’ ‘焚黃儀’ ‘賜祭儀’에 해당된다.

8) 『國朝五禮儀』 권7, 『凶禮·服制』, “王世子斬衰三年. … 【若內喪在先, 則服期, 十一月而練, 十三月而祥, 十五月而. 卒哭前進見時, 白直領衣·黑笠·黑條兒·白皮靴. …】”

9) 내상재선 시 염습의례와 빈전의례 등이 모두 세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국조오례의』에서는 내상재선으로 구분하여 규정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국조오례의』는 상례의 대상에 따른 주체의 차이를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大喪을 기준으로 하는 『국조오례의』에서, 즉위식 이전인 성복까지의 절차는 ‘세자’가 중심이 되는데, 이 ‘세자’는 嗣王으로서 즉위 이후 ‘전하’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내상재선의 경우 ‘세자’는 사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분없이 ‘세자’로 혼용되었다. 둘째, 虞祭 이전의 의례에서 主喪은 슬픔을 표현하는데 집중하여 곡하는 절차만을 수행했으므로, 주상의 역할이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례 이후 혼전의례에서는 세자가 내상재선을 주관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내상재선은 왕의 삼년상이 아니었으므로, 왕은 공식적으로 국상의 진행을 보고받고 결정할 수 있었다.

(2) 내상재선 시 왕비의 시호는 왕이 내려주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대상과 내상의 경우, 의정부에서 의논하여 시호를 정하고 시책과 시보를 만든 후, 영의정이 종묘에 시호를 청하는 제향을 올렸다. 奠幣禮 - 三上香 - 酌獻禮를 행하고 시책과 시보를 읽는 방식으로 거행되었다. 반면, 내상재선의 경우는 전폐례 - 삼상향 - 작헌례 없이 영의정이 시책과 시보를 읽었는데, 평소 종묘에 고하는 의식에 따른 것이었다.④ 이러한 방식은 왕이 왕비에게 시호를 내렸음을 종묘에 알리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이어 빈전에 시책과 시보를 내리는 절차[贈諡冊寶]를 행했는데, 남편인 왕이 내려준다는 의미에서 ‘증’자가 사용되었다. 대상과 내상의 경우, 자손인 왕의 입장에서 빈전에 시책과 시보를 올리는 절차[上諡冊寶]를 행하는 것과 차별적이다.⑤

(3) 왕이 영의정을 獻官으로 임명하여, 발인을 준비하는 ‘啓殯’부터 산릉에서 우주를 쓴 후에 올리는 ‘立主奠’까지를 담당하도록 하였다.⑥ 대상과 내상의 경우는 代奠官이 헌관을 맡았고, 主喪者를 대신하여 奠을 올린다는 의미가 강조되었다. 주상자는 슬픔을 다해 곡할 뿐, 전을 올리는 의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다.⑩ 이와 달리 내상재선에서 영의정은 왕의 명령에 따라 헌관의 역할을 담당했으므로, 대전관과는 구분되었다. (4)산릉을 마련하는 ‘治葬’ 항목에서, 내상재선의 경우에는 碑를 세우지 않도록 했다.③ 왕과의 합장을 전제로 내상재선 시 먼저 비를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왕의 복제가 내상재선 의례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국조오례의』에는 내상재선 시 왕의 복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⑪ 다만, ‘殿下服盡’ 즉 왕이 상복을 마치는 시점이 중요한 기준으로

10) 석창진, 앞의 논문, 110쪽.

11) 임진왜란 이후 의례, 등록 등 참고할 전적이 소실된 상황에서 치러진 선조비 의인왕후상에서는 『국조오례의』가 유일한 기준이 되었다. 『국조오례의』에서 내상재선 시 왕의 복제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상의 자취장기라는 복제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었던 것이다(김윤정, 앞의 논문, 2017). 18세기 『국조상례보편』에는 내상재선 시 왕의 복제가 자취장기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거듭 제시되었다. ‘계령’ 항목에서 제사의 정지[停祭]는 社稷祭를 제외한 모든 제사를 졸곡 전까지 중단하는 규정이었다. 다만, 내상제선의 경우에는 전하복진 이후에 모든 제사를 정상적으로 거행할 수 있었다.

또한 ‘복제’ 항목에서 ‘전하복진’은 백관뿐 아니라, 내명부, 여관, 내시, 별감 등 궁궐에 출입하는 모든 대상의 상복을 규제하는 기준이 되었다. 백관은 전하복진 전에 대궐에 있거나 進見할 때는 白衣·烏紗帽·黑角帶를 착용하였다. 전하복진 이후라면 近臣은 대궐 안에서 淺淡服을 입고, 진현할 때는 吉服을 입고, 밖에 나갈 때는 衰服을 입는 등 복색을 구분하였다. 내명부 이하도 전하복진 전에 대궐 안에 있거나 진현할 때는 白衣裳·黑帶를 착용했고, 전하복진 후에는 대궐 안에 있을 때는 천담복, 진현할 때는 길복, 밖에 나갈 때는 최복을 입도록 했다.¹²⁾ 다만, 동궁의 내시와 별감은 세자의 상복에 따라 변복하고, 답제 후에도 黑衣를 입었다.¹³⁾

이러한 규정은 소헌왕후 국상의 복제논의를 반영한 것이었다. 세종은 자신의 상복과 백관 상복과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국 사신이 와서 보게 된다면 임금은 吉服을 입고 신하는 凶服을 입은 것을 비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은 河緯地로 하여금 古制를 상고하도록 명령했고,¹⁴⁾ 소헌왕후상의 복제 의주에는 백관을 포함한 내시, 별감 등의 진현복이 전하복진을 기준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동궁 소속 내시와 별감의 상복은 세자복에 따라 변복하는 것으로 구분되었다.¹⁵⁾ 이러한 규정이 『세종실록』 「오례」를 거쳐 『국조오례의』로 계승되었다.

그렇다면 내상제선에서 왕이 상복을 마치는 ‘전하복진’은 언제를 의미하는 것인가? 소헌왕후상에서 세종은 자최상복을 입지 않았고 白木緜團領·生布

12) 『國朝五禮儀』 권7, 「凶禮·服制」, “內命婦嬪以下服, 與王妃服同。【… 若內喪在先, 則殿下服盡前, 在闕內及進見服, 白衣·裳·黑帶, 服盡後, 在闕內服, 淺淡服, 進見服, 吉服, 出外服, 衰服, 卒哭後, 闕內服, 吉服。… 宗親及文武百官 … 若內喪在先, 則殿下服盡前, 闕內及進見, 白衣·烏紗帽·黑角帶, 服盡後, 近臣, 闕內, 淺淡服, 進見, 吉服, 出外, 衰服, 卒哭後, 進見, 吉服, 出外, 白衣。”

13) 『國朝五禮儀』 권7, 「凶禮·服制」, “若內喪在先, 則並齊衰期年. 東宮內侍以下卒哭後, 白衣·烏紗帽·黑角帶, 終期年. 祥後, 玉色衣, 禫後, 黑衣, 凡干喪事, 還着衰服. … 若內喪在先, 則東宮別監, 生布衣·頭巾·麻帶, 卒哭後, 白衣·黑頭巾·黑帶, 祥後, 玉色衣, 禫後, 黑衣.”

14) 『세종실록』 권111, 세종 28년 3월 辛卯.

15) 『세종실록』 권111, 세종 28년 3월 甲午.

帶·白靴를 착용했다가 30일 만에 벗었다.¹⁶⁾ 백목면단령은 거친 生布로 만드는 자취의 衣裳과는 재료와 형태가 다른 것이었고, 생삼베로 만든 띠인 생포대를 통해 상복의 의미를 구현하였다. 30일은 처의 상복인 기년복을 기준으로 하여 『가례』에 인용된 휴가 주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었다. 결국 ‘전하복진’은 왕비의 승하일로부터 30일간 왕이 생포대를 착용했다 벗는 시점을 의미한다. 세종의 상복은 『국조오례의』 ‘전하복진’의 기준이 되었고, 이후 내상재선인 공혜왕후상과 장경왕후상에서 왕의 복제로 사용되었다.

세종 대 국상에서는 易月制 폐지와 卒哭變除의 적용을 통한 삼년복의 원칙이 강조되었지만, 기년 이하는 輕喪으로 간주되어 자취복을 입지 않고 『가례』의 휴가 규정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¹⁷⁾ 휴가 규정인 30일의 기준은 원경왕후상의 태종 상복에서부터 적용되었다. 처음에 예조는 태종에게 13일 만에 상복을 벗고 길복을 입으며, 시녀와 환관, 시위하는 관리도 이대로 따를 것을 아뢰었다. 그런데 태종은 관리가 입직할 때 13일 후에는 백의·흑각대·흑립을 착용하고, 30일 후부터 길복을 입도록 결정했다.¹⁸⁾ 13일은 처상의 기년복에 역월제를 적용한 것이었고, 30일은 『가례』의 휴가 규정을 따른 것이었다. 태종 역시 원경왕후 승하 후 13일째인 7월 22일에 喪帶인 생포대를 벗었는데, 바로 길복을 입지 않고 백의·백립·흑각대로 30일을 마쳤다.¹⁹⁾ 이 결정은 소헌왕후상에서 세종의 복제에 영향을 미쳤지만, 세종은 생포대를 착용하는 기간을 30일로 늘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세자가 주관하는 혼전의례에서 왕과 세자의 의례적 조율이 강조되었다. 『국조오례의』에 규정된 내상재선의 경우, 발인 이후 산릉과 혼전의 의례에서(⑦~⑰) 세자의 역할이 명확히 드러난다. 먼저, 발인 항목에서 내상재선의 경우는 “세자가 陪行한다.”는 규정이 수록되었다. 세자는 산릉에 나아가 下玄宮, 입주전 등의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대상과 내상에서의 ‘전하의 역할’을 담당했다. 반우한 후 혼전에서 우제, 줄곡, 연제, 상제, 담제는 세자가

16) 『세종실록』 권111, 세종 28년 3월 甲午 “大殿, 白木緜團領·生布帶·白靴, 終三十日.”

17) 정경희, 앞의 논문, 113쪽.

18) 『세종실록』 권8, 세종 2년 7월 丙戌.

19) 『세종실록』 권8, 세종 2년 7월 戊子 “上王釋喪帶, 欲以白笠·白衣·黑角帶, 終三十日.”

주관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럼에도 왕의 존재는 세자의 의례를 제약하는 기준이 되었고, 왕과 세자의 위상에 따른 차등적 규정이 요구되었다.

세자는 혼전에서 사시제와 속절제 등을 거행했고, ‘魂殿四時及臘親享儀’, ‘魂殿俗節及朔望親享儀’ 항목에 내상재선 규정이 마련되었다.²⁰⁾ 이 규정에는 세자의 의례가 왕의 의례와 중복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이 포함되었다. 먼저, 사시 및 납향 때에 왕이 종친과 백관을 거느리고 친히 종묘나 文昭殿에 제향하게 되면, 세자가 행하는 혼전의 제향에는各司에서 1인이 참석하여 陪祭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정조·동지·초하루·보름에는 백관들이 왕에게 朝會하기 때문에, 초하루·보름에는 각사에서 1인이 세자가 행하는 혼전의 제향에 배제하였다. 정조와 동지에는 세자 역시 왕에게 조회해야 하기 때문에, 혼전의 제사는 따로 날을 택하여 행하고 백관이 배제하였다. 정조와 동지 당일에는 세자 대신 獻官과 執事들이 혼전에서 제사를 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국조오례의』의 규정은 소헌왕후상에서 세종과 정인지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 왕-세자-백관의 의례적 역할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²¹⁾ 먼저, 정인지는 소헌왕후의 삼년상 동안 정조·동지·誕生日 등의 朝賀를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아내가 죽은 지 3년 후에 娶妻하는 것은 孝子の 心情을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의례』의 내용을 근거로, 세종이 세자의 심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종은 “동궁과 여러 신하들이 왕비를 위하여, 나에게 조하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로 이런 이치가 없다.”고 단언했다. 다음으로, 정인지는 삼년 동안 크고 작은 宴會와 조하에 모두 음악을 정지하기를 청했다. 풀나라 叔向의 “왕이 重喪이 있는데 음악을 사용하니 그릇된 일이다.”는 주장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세종은 사신을 접대하거나 정조·동지·탄

20) 『國朝五禮儀』 권7, 『凶禮·魂殿四時及臘親享儀』, “宗親及文武百官, 大祥前, 服衰服, 陪祭. 若殿下於四時及臘率宗親及文武百官, 親享宗廟或文昭殿, 則各司一員, 陪王世子行祭.”; 『凶禮·魂殿俗節及朔望親享儀』, “若內喪在先, 而王世子行祭, … 宗親及文武百官, 大祥前, 服衰服, 陪祭. 唯正至·朔望, 朝於殿下, 故朔望, 則各司一員, 陪王世子行祭. 正至, 則先期別擇吉日, 王世子行祭, 宗親及文武百官, 陪祭. 當正至日, 獻官·諸執事行祭.”

21) 『세종실록』 권113, 세종 28년 7월 壬辰.

일의 연회 등은 동궁과 여러 신하들이 친히 스스로 宴樂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왕인 자신을 위하는 것이므로 음악을 사용해도 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세종은 정조·동지 등에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조하 의례와 세자가 소헌왕후의 혼전인 휘덕전에서 행하는 제향 간의 위상을 규정하였다. 정인지는 보편적 유교 윤리인 효를 중심으로 세자의 心喪을 통한 삼년상의 구현을 강조한 반면, 세종은 왕을 중심으로 하는 의례의 차등 원칙에 따라 혼전의례를 조율하였다. 이러한 결정이 『국조오례의』 ‘혼전속절급삭망친향의’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국조오례의』 ‘혼전사시급납친향의’의 규정은 소헌왕후상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백관들은 왕의 제향에 참석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상재선에서는 세자가 주상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지만, 상례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왕과 세자의 위상 문제가 복잡하게 논의되었다. 세자가 왕에게 조하례를 행하기 위해 혼전의례의 날짜를 조정했고, 백관들은 왕의 의례에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내상재선에서 아버지이자 국왕이라는 尊者의 위상은 세자의 의례를 제약하면서, 내상재선의 차등적 규정을 생산하는 기준이 되었다.

[표 1] 『국조오례의』 내상재선 규정

	항목	내상재선 규정	공간
①	戒令	停祭 : 전하복진 후 행제	
		停樂 : 출곡 후 제사에 음악사용	
		吏曹 : 啓聞	
②	服制	세자 : 자취장기	
		內命婦嬪이하 : 전하복진 후 吉服(進見服)	
		尙宮이하 : 侍衛宮人은 전하복진 후 길복	
		왕세자만 : 자취기년	
		親子服 : 자취장기	

		<p>종친·문무백관 : 近臣은 전하복진 후 길복(진현복)</p> <p>內侍·司謁 등 : 대전내시-전하복진 후 길복(侍衛) 동궁내시-세자복에 따라 變服</p> <p>別監·差備人 : 대전별감-전하복진 후 천담복(闕內) 동궁별감-세자복에 따라 변복</p> <p>有職事前銜 등 : 오사모·혹가대(줄곡 전 入直)</p> <p>甲士·正兵 : 백의·혹립·혹대(입직)</p>	
③	治葬	碑를 세우지 않음	산릉
④	內喪請諡儀	대신을 보내 종묘에 고함, '請諡' 없음	종묘
⑤	上諡冊寶儀	'上'을 '贈'으로 변경	빈전
⑥	啓殯儀	왕이 영의정을 獻官으로 임명	빈전
⑦	發引班次	세자 陪行	빈전→산릉
⑧	魂殿虞祭儀	세자 行祭	혼전
⑨	魂殿四時及臘親享儀	<p>세자 행제 : 연복[練後]→담복[祥後]→무양적색혹단령[禫後~再期 : 음악, 음복]</p> <p>백관 : 최복[祥前]→陪祭×[상후]-왕의 종묘 제사 시, 혼전에는各司의 1인 배제</p> <p>아현관이하 : 천담복[상후]→길복[담후~제기]</p>	혼전
⑩	攝事儀	현관이하 : 최복[연후]→천담복[상후]→祭服[담후 : 음악, 음복]	혼전
⑪	魂殿俗節及朔望親享儀	<p>⑨와 동일(세자, 백관, 아현관이하)</p> <p>삭망(각사에서 1인 배제), 정조·동지(택일), 삭망(음악×)</p>	혼전
⑫	攝事儀	⑩과 동일, 삭망(음악×)	혼전
⑬	四時及臘俗節朔望享山陵儀	현관이하 : 최복[연후]→천담복[상후]→제복[담후]	산릉
⑭	親享山陵儀	<p>세자 행제 : 연복[연후]→담복[상후]→무양적색혹단령[담후~제기]</p> <p>아현관이하 : 최복[연후]→천담복[상후]</p> <p>백관 : 배제×</p>	산릉
⑮	練祭儀	<p>11개월(택일), 세자 행제 : 최복→연복</p> <p>백관·아현관이하 : 최복</p>	혼전
⑯	祥祭儀	<p>13개월(당일), 세자 행제 : 연복→담복</p> <p>백관·아현관이하 : 최복→길복</p>	혼전

⑪	禋祭儀	15개월(택일), 세자 행제 : 담복→무양적색흑의	혼전
		아현관이하 : 길복	
		백관 : 배제×	

2) 내상재선 혼전의례의 특징

『국조오례의』에서 내상재선 시 왕의 복제와 行禮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내상재선이 세자의 부제위모상을 기준으로 거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내상재선 시 세자의 복제는 자최장기로서, 11개월에 練祭, 13개월에 祥祭, 15개월에 禋祭를 지냈다. 아버지의 생존으로 인해 모복의 자최삼년을 자최장기로 강등함으로써, 존자인 아버지의 위상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세자의 심상삼년을 고려하여 담제 이후에도 만 2년인 再期까지 내상재선의 혼전의례는 계속되었다. 재기 이후에도 남편인 왕의 삼년상 후 祔廟를 행하기 전까지, 내상재선의 혼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내상재선의 혼전의례는 연제-상제-담제-재기의 절차에 따른 변화를 통해 흥례에서 길례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대상과 내상의 경우, 삼년상이 마무리되는 담제 후 당일 혹은 그 달을 넘기지 않고 부묘가 행해졌고, 당연히 혼전은 철폐되었다. 혼전에서의 우제-졸곡-연제-상제-담제 의례는 슬픔을 줄여가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만 모두 곡을 동반하는 상례 절차였고, 혼전은 명확한 흥례의 공간이었다. 반면, 내상재선의 경우 담제 후의 제사는 길례로 간주되었으므로 내상재선의 혼전은 흥례와 길례의 공간으로서의 혼종성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혼전의례의 위상을 결정하는 복잡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은 내상재선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²⁾

22) 석창진은 세종대 내상재선인 소헌왕후 국상의례를 통해, 혼전의례가 흥례에서 길례로 전이되는 과정이었음을 지적했다. 혼전의식의 차등적 질서를 강조하여, 담제 이후의 혼전의식은 종묘제사 절차와 가까운 길례였음을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은 소헌왕후 국상의례만의 특징으로 『국조오례의』 규정과는 다르다고 주장하였다(석창진, 앞의 논문, 112~117쪽). 그러나 이것은 소헌왕후 국상

소헌왕후의 혼전인 휘덕전에서 행해진 삭망제와 사시제 등의 제사는 기년 전과 기년후로 구분하여 의주가 마련되었다(『輝德殿期年內四時大享及臘王世子行禮儀』/『輝德殿期年後四時大享及臘享王世子行禮儀』).²³⁾ 이때의 기년은 13개월이 아닌 담제 이후를 의미하고, 기년 후의 의주는 길례로서의 성격을 보여준다. 두 의주를 비교해보면, 첫째, 백관들은 담제 전의 혼전 제사에만 陪祭하였다. 둘째, 담제 후 의례에는 음복을 위한 爵을 따로 설치하여 음복례를 행했다. 셋째, 담제 후 의례에는 음악을 사용하면서 악공들이 참석하여 음악을 연주했다. 휘덕전 제향의 음악은 문소전의 예에 따라 마련했고, 초헌의 악장은 소헌왕후의 덕행을 기록하여 새로 찬술했다.²⁴⁾ 넷째, 彝尊의 진설에서 제 4행의 山疊를 추가하여 진설하였다.

이러한 의주는 『국조오례의』의 내상제전 규정으로 정리되었다. 먼저, 담제 후 제향에서 음복례와 음악사용을 규정함으로써, 길례의 성격을 강조했다.²⁵⁾ 다만, 이준의 진설방식은 우제부터의 혼전의례에 모두 4행을 진설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담제 전후의 구분은 드러나지 않는다.²⁶⁾ 그럼에도 연제 이후 곡을 중단하고, 담제 이후 음복과 음악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내상제전의 담제 후 제향은 길례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준다.

또한 『국조오례의』는 백관의 기년복을 적용하여, 백관과 아헌관 이하 제집사의 복색과 배제 여부를 보다 상세하게 수록하였다[표 2]. 세자는 자최장기를 기준으로 연제-상제-담제에 따라 상복을 바꾸었고, 담제 후 재기까지는 심상복으로 無揚赤色黑衣를 입었다. 제사에 참여하는 아헌관 이하 제집사는 상제 이후 淺淡服을 입었고 담제 이후 재기까지는 吉服을 입었다. 백관은 상제 때 길복을 입었고, 상제 이후에는 혼전의례에 배제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문은 세자의 심상삼년을 인정하여 만 2년인 재기까지의 혼전의례를 규정

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내상제전의 독특한 성격으로서, 이후 내상제전의 사례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23) 『세종실록』 권114, 세종 28년 10월 丁酉; 『세종실록』 115권, 세종 29년 3월 甲申.

24) 『세종실록』 권115, 세종 29년 3월 壬申.

25) 『國朝五禮儀』 권7, 『凶禮·魂殿四時及臘親享儀』, “若內喪在先, 而王世子行祭 … 其禮後祭, 用樂有飲福.”

26) 이러한 차이는 석창진, 앞의 논문, 115~117쪽 참조.

한 것이었다.

재기가 되면 혼전에서 忌辰祭를 지내고, 조석상식을 중단했다. 『국조오례의』에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내상재선의 혼전에서는 담제 후 재기까지 조석상식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헌왕후상에서 세자는 담제 후에도 혼전에 上食을 올렸고, 공혜왕후상에서도 담제 후 재기까지 문소전의 방식에 따라 조석상식이 행해졌다.²⁷⁾ 재기 이후에 세자는 종묘의 예와 같이 祭服을 입고 사시제 등의 제향을 거행했다.²⁸⁾ 이렇게 재기 이후 부모 전까지 내상재선의 혼전은 명백한 길례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표 2] 『국조오례의』 魂殿四時及臘親享儀의 참여자와 복식

		凶			凶吉	吉
		성복	연제(11개월)	상제(13개월)	담제(15개월)	재기(25개월)
세자친향	세자	衰服	練服	禪服	無揚赤色黑衣	祭服
	이현관 제집사	최복	최복	淺淡服	吉服	
	백관	최복	최복	陪祭×		
섭사	현관 제집사	최복	최복	천담복	제복	

내상재선의 혼전은 담제 전에는 흉례, 재기 후에는 길례의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담제 후 재기까지 내상재선의 혼전은 길흉이 혼재된 양상으로 존재하였다. 심상복을 입은 세자의 존재는 삼년상의 의미를 구현하는 것이지만, 길복을 입은 집사들과 음악의 사용은 길례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세자의 존재는 재기까지 내상재선의 혼전이 완전한 길례의 공간이 아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였다.

세자없는 내상재선인 공혜왕후상에서는 세자의 부재로 인한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먼저, 세자가 없음에도 내상재선은 父在爲母期에 따른 자

27) 『세종실록』 권118, 세종 29년 11월 丁未; 『성종실록』 권56, 성종 6년 6월 丙戌.

28) 『세종실록』 권120, 세종 30년 3월 己酉; 4월 庚申.

최장기로 시행되었다. 그런데 담제의 주관자인 세자가 없는 상황에서, 祥祭 때 상복을 벗은 백관들이 담제를 거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논의되었다. 『국조오례의』와 달리 소헌왕후상에서 백관들이 담제에 배제한 것은 權道를 따른 것으로 간주되었다.²⁹⁾ 이 논의의 결론은 확인할 수 없지만, 담제를 지내는 15개월째인 6월에 담제 후 혼전의례에 대한 논의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담제 시행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장경왕후상의 경우는 아들인 인종이 너무 어려 의례를 주관할 수 없었으므로, 백관이 담제를 거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³⁰⁾ 이렇게 내상재선은 세자의 행례와 무관하게 15개월에 담제를 지내는 자최장기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세자의 부재는 담제 후 재기까지의 의례에서 삼년상의 의미를 구현하는데 장애가 되었다. 『국조오례의』에 따르면 심상복을 입는 세자가 없는 경우, 담제 후의 혼전 제사에 참여하는 헌관과 제집사 등은 모두 길복을 입었다. 혼전과 달리 산릉을 지키는 수릉관·시릉관과 陵參奉·飯監 등은 내상재선의 구분없이 모두 삼년상에 따라 재기까지 천담복을 입었다.³¹⁾ 그런데 공혜왕후상에서는 혼전에 入直하는 종친과 儀賓, 내시와 殿參奉 등이 산릉의 관원들과 같이 재기까지 천담복을 입는 것으로 결정되었다.³²⁾ 이 규정은 소헌왕후상에서 입직 종친 등의 상복을 백관과 동일하게 정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³³⁾

이러한 결정은 심상삼년을 행하는 세자를 대신하여, 혼전의례를 담당하는 입직 종친과 혼전내시 등이 재기까지는 천담복을 입어 삼년복의 의미를 구현

29) 『성종실록』 권54, 성종 6년 4월 庚辰.

30) 『중종실록』 권25, 중종 11년 5월 丁亥.

31) 『國朝五禮儀』 권7, 『凶禮·服制』 “守陵官及侍陵內侍, 斬衰三年。【衰服之制及練祥禫服, 與親子服同。內喪, 則齊衰。】 … 社稷署宗廟署官及文昭殿諸陵諸殿參奉等官, 入直, 並服常服·烏紗帽·黑角帶, 出外, 與百官同。”

32) 『성종실록』 권41, 성종 5년 4월 庚午 “一, 守陵官及侍陵官·內侍齊衰服, 至練以練布爲冠, 去首經·負版·辟領·衰, 自祥至再期, 着淺淡服。【祭時同。】 … 至練陵參奉·飯監練布裏紗帽, 仍垂帶, 各差備人以練布爲頭巾, 自祥至再期, 着淺淡服。【祭時同。】 一, 魂殿入直宗親·儀賓·內侍·殿參奉及各差備人服, 與陵所祿官以下各差備人同。”

33) 『세종실록』 권111, 세종 28년 3월 甲午 “輝德殿入直宗親·駙馬及內侍·內直茶房·殿直等, 期年內入番時着衰服。祥禫服色, 與百官同。”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담제 후 혼전의례가 진행되면서 불일치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입직 종친과 내시 등은 천담복을 입었고, 나머지 헌관과 여러 집사들은 『국조오례의』에 따라 길복을 입었는데, 같은 공간에서 의례를 행하면서 다른 복장을 갖추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결국 『국조오례의』에 따라 모두 길복을 입는 것으로 변경되었다.³⁴⁾

이러한 논의를 거쳐, 공혜왕후상에서는 담제 이후 재기까지 혼전의 제사 및 조석상식과 주다례를 문소전의 예에 따르고 음악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³⁵⁾ 이것은 내상재선 혼전이 갖는 길흉의 혼종성을 보여주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소전은 종묘와 구분하여 효의 실천을 위주로 마련된 原廟로서, 생시와 같이 모신다는 의미에서 肉饈으로 하루 세끼의 식사를 올리고 승하한 날에 맞춰 기신제를 거행하는 공간이었다.³⁶⁾ 세자없는 내상재선의 혼전은 문소전과 같은 길례의 공간으로 간주되었다. 그렇다면 굳이 담제 후 再期까지의 혼전의례에서 음악사용을 금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결정은 담제 후 음악사용을 허용한 『국조오례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음악사용을 재기까지 금지한 것은 세자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삼년상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내상재선 혼전에서의 음악사용 문제는 장경왕후상에서 다시 논의되었다. 공혜왕후상에서 『국조오례의』와 달리 재기 이후에 비로소 음악을 사용한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예조에서는 “공혜왕후상에서 담제 뒤에 음악을 써야 하는데도 쓰지 않고 성종 7년 단오제 때에 이르러 비로소 음악을 썼는데, 이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공혜왕후상에서의 재기 이후 음악 사용은 근거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국조오례의』에 따라 담제 이후 음악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³⁷⁾ 『국조오례의』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담제 이후 세자없는 내상재선의 혼전은 완전한 길례의 공간으로 간주되었다.

34) 『성종실록』 권56, 성종 6년 6월 丙戌.

35) 『성종실록』 권56, 성종 6년 6월 丙戌.

36) 이 옥, 『조선왕실의 제향공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267~276쪽.

37) 『중종실록』 권23, 중종 11년 1월 乙未.

세자가 주관하는 내상재선의 혼전의례는, 세자의 상복을 기준으로 연제-상제-담제-재기의 절차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되었다. 15개월 담제 후 내상재선의 혼전은 음복과 음악이 허용되는 길례의 공간이지만, 심상삼년을 행하는 세자의 존재로 인해 재기까지는 흉례의 의미가 유지되었다. 재기 이후부터는 耐廟를 기다리는 온전한 길례의 공간으로 간주되었다. 한편, 세자 없는 내상재선의 혼전의례는 세자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자취장기를 원칙으로 운영되었다. 그럼에도 세자의 부재로 인해 담제 이후의 혼전은 길례의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3. 내상재선 복제의 성립과 적용

『국조오례의』의 내상재선 의례에서 아버지이자 국왕이라는 尊者의 위상은 세자의 의례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내상재선의 복제는 세자의 부재위모복인 자취장기로 규정되었고, 실제 의례 역시 세자의 복제를 기준으로 거행되었다. 또한 왕비를 위한 백관복은 세자없는 내상재선에서 중요한 논의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국조오례의』 내상재선 의례의 토대가 되었던 세자복과 백관복의 성립과 변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세자복제의 성립과 의미

(1) 父在爲母期の 적용

조선시대 최초의 국상이자 내상재선이었던 태조비 신덕왕후상에서, 세자는 자취삼년복을 입었다. 신덕왕후 강씨는 1396년(태조 5) 8월 13일 밤에 判內侍府事 李得芬의 집에서 승하였다. 3일째인 8월 15일에 漢陽府 客舍였던 舊宮에 殯殿이 마련되었고, 세자와 백관들이 齊衰服으로 성복하고 篋을 올렸다. 이 날 태조는 성복에 참여하지 않았고, 白衣·白冠으로 안암동에 나가서 능터를 물색하였다. 세자는 25개월째 되는 1398(태조 7) 8월 13일에

길복으로 갈아입었다.

신덕왕후상의 세자복제는 자취삼년복으로 간주되지만 담제를 포함한 27개월과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삼년상의 절차에 따라 구체적으로 상복을 바꾸고 벗는[變除] 방식이 규정되지 않았다. 게다가 공적인 위상과 역할을 갖는 세자가 3년간 항상 상복을 입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變服의 방식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록의 공백으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덕왕후상에서 세자의 삼년복은 두 가지 상반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세자의 삼년복은 모를 위한 자취삼년복이라는 유교식 상복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공양왕대 조선 건국세력의 주도로 時王之禮인 『大明律』에 따라 정비한 오복제도에 근거하였다.³⁸⁾ 삼년복은 부모에 대한 효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었고, 세자의 지위에서도 삼년복을 입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강했을 것이다.

둘째, 고례의 父在爲母期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예학적 한계가 지적되었다. 『의례』는 부가 생존해 있을 때 모의 상복을 삼년이 아닌 자취장기로 낮추어 부에 대한 壓尊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가례』의 본문에서 모의 상복은 부의 생존여부와 상관없이 자취삼년이지만, 주자의 제자인 楊復의 附註에서는 『의례』의 부재위모기가 주자의 만년설로 간주되었다.³⁹⁾ 따라서 고례와 주자 예학에 대한 연구가 심화될수록, 부재위모기는 내상재선 복제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태종비 원경왕후상에서 『의례』의 부재위모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원경왕후는 1420년(세종 2) 7월 10일 別殿에서 승하였다. 태종의 생존 시 사망했지만, 태종은 상왕이었고 아들인 세종이 왕위에 있었으므로 내상재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원경왕후상은 세종에게 부재위모상이었으므로, 이때의 논의는 내상재선의 세자복제가 자취삼년에서 자취기년으로 바뀌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38) 안희재, 앞의 논문, 256쪽.

39) 정경희, 앞의 논문, 80쪽.

원경왕후상에서 세종의 복제는 여러 단계의 논의를 거쳐 『의례』의 부재위 모기에 따른 자최장기로 시행되었다. 처음 성복 시 세종의 복제는 ‘『의례』의 부재위모기 제도를 따른 것’임을 명시했지만, 구체적인 형식은 역월하여 13일 만에 최복을 벗고, 백의·오사모·흑각대로 기년을 마치는 것이었다.⁴⁰⁾ 역월제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세종의 복제는 『의례』에 규정된 ‘자최장기-심상삼년’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⁴¹⁾ 『의례』의 부재위모기를 따른다는 修辭는 아버지 생존 시 아들의 어머니를 위한 상복을 삼년복이 아닌 기년복으로 낮춘다는 의미에 불과했다.

세종의 복제와 『의례』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의례』의 자최장기는 오동나무 지팡이인 喪杖을 짚고 15개월에 禫祭를 지내는 것으로, 삼년을 기년으로 줄이지만 삼년복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반면 세종의 복제에서 13일에 최복을 벗도록 한 것은 15개월의 자최장기가 아닌 13개월의 齊衰不杖期를 以日易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례』의 자최장기는 심상삼년을 포함하는 것으로, 아버지는 아들의 심상삼년을 고려하여 “반드시 3년이 지난 뒤에 다시 아내를 맞이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었다. 심상은 몸에 상복을 입지는 않지만 마음에 슬픔을 담고 있기 때문에,⁴²⁾ 의복·거처 등에 규제가 따랐다. 그러나 세종의 복제에는 심상삼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 세종은 삼년복을 입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도 상왕인 태종의 명령을 따라 자최기년복을 입었다. 하지만, 이일역월하여 13일 만에 최복을 벗는 것에는 불복하여 장례 후 최복을 벗겠다고 주장했고, 태종도 세종의 효심을 인정하여 허락하였다.⁴³⁾ 세종은 9월 17일에 최복을 입고 장례

40) 『세종실록』 권8, 세종 2년 7월 丙子 “主上殿服齊衰期年，遵儀禮父在爲母期之制也。十三日而除，白衣·烏紗帽·黑角帶。”

41) 『儀禮注疏』 「喪服·齊衰杖期」 “父在爲母。【母之與父恩愛本同，爲父所壓屈，而至葬。是以雖屈，猶伸禮杖。】 傳曰，何以葬也屈也？至尊在，不敢伸其私尊也。父必三年而娶，達子之志也。【子於母，屈而葬，心喪猶三年。故父雖爲妻葬，然必三年乃娶者，通達子之心喪故也。】”

42) 『禮記集說』 「檀弓」 “事師，無犯無隱，左右就養，無方，服勤至死，心喪三年。… 心喪，身無衰麻之服，而心有哀戚之情，所謂若喪父而無服，是也。”

43) 『세종실록』 권8, 세종 2년 7월 戊寅.

를 치른 후 혼전인 廣孝殿으로 반우하여 초우제를 지냈다. 신하들이 최복을 벗을 것을 청하자, 세종은 졸곡 때 최복을 벗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졸곡 이후에는 백의를 입고 정사를 보지만, 광효전에서 삭망제 등을 지낼 때는 최복을 입는 방식으로 기년을 마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⁴⁴⁾ 다음날 태종은 세종이 산릉 후에 최복을 벗고 반우하도록 한 父命을 어겼음을 지적하면서, 차라리 삼년복을 입으라고 질책했다. 세종은 그 날로 바로 최복을 벗었고, 태종의 명령에 따라 최복을 불살라 폐기했다.

이후 예조는 『의례』를 다시 상고하여 11개월에 練祭, 13개월에 祥祭, 15개월에 禫祭를 지내고 심상삼년할 것을 아뢰어 허락을 얻었다.⁴⁵⁾ 이로써 세종 3년 5월 26일에 연제, 7월 10일 상제, 6월 20일에 담제를 거행했다. 연제는 연복을 입고 虞主를 練主로 바꾸는 절차이지만, 초우제 후 이미 최복을 폐기했으므로 변복하는 절차는 제외되었다.⁴⁶⁾ 상제 때는 黻布衣·烏紗帽·黑角帶를 禫服으로 갖추고 제사를 지냈으며, 담제 때는 담복으로 제사한 후 길복으로 돌아입었다. 이렇게 자취장기를 원칙으로 연제-상제-담제가 행해졌지만, 담제 후 바로 길복을 입는 것은 심상삼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1446년(세종 28) 소헌왕후상에서는 세종의 주도로 세자복제의 기본틀이 완성되었다. 처음에 세종은 친모인 원경왕후상에서 상왕인 태종이 생존해 있음으로 인해 기년복을 입었던 것을 미안하게 생각했다. 세종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데 어머니를 위하여 기년을 입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언급하면서, 소헌왕후상에서 세자는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영의정 황희 등은 “삼년상은 천하의 通喪으로,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똑같다.”는 점에서 삼년복에 찬성했다. 이에 세종은 세자와 대군 등이 최복을 입었다가 졸곡 후에는 흰옷으로 돌아입고 3년을 마치도록 명령했

44) 『세종실록』 권9, 세종 2년 9월 辛巳.

45) 『세종실록』 권10, 세종 2년 11월 辛卯.

46) 기존연구에서는 연복으로 돌아입는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간주하고 『세종실록』 『의례』의 ‘練祭儀’를 근거로 원경왕후상의 연제에도 당연히 변복의 절차가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양정현, 앞의 논문, 34쪽). 그러나 원경왕후상은 이후의 소헌왕후상처럼 졸곡변제와 자취장기복의 원칙이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초우제 후 최복을 폐기했다. 따라서 연제 때 최복의 負版·辟頤·衰를 제거하여 입는 練服을 갖출 수 없었으므로 변복 절차를 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다.⁴⁷⁾ 이러한 결정은 역월제가 아닌 태종상의 졸곡변제를 따르고, 내상재선을 내상과 동일하게 자취삼년복으로 간주한 것이었다.

그러나 집현전 직제학 金汝 등은 세자복으로 자취장기-심상삼년을 주장하며, 내상재선의 자취삼년복을 비판했다. 세종도 복제를 재고하여, 하위자에게 古制를 상고하게 하였다. 결국 세종은 태종의 成憲이자 정자·주자의 예설인 부재위모기를 따르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자와 주자의 부재위모기는 심상삼년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신이 원경왕후상에서 기년 이후 길복을 입은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세자가 기년에 상복을 벗고 나서 입을 복색을 정하도록 명령했다. 3월 28일 황희 등은 淺淡服으로 심상삼년을 마칠 것을 아뢰었고, 그대로 결정되었다.⁴⁸⁾

이러한 소헌왕후상의 세자복제는 원경왕후상에서 갖추어진 자취장기의 제도를 토대로, 심상삼년을 보충하여 『의례』의 부재위모기를 온전히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세자로서의 공적인 지위로 인해 계속 최복을 입을 수는 없었으므로, 졸곡을 기준으로 졸곡 후에는 백의·오사모·흑각대·백화를 사용하되 喪事에 관계할 때는 최복을 입었다. 이러한 졸곡변제는 원경왕후상에서 태종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방식으로, 역월제보다는 상례의 원리를 강조한 것이었다. 또한 세자로서 왕에게 進見할 때는 졸곡 전이라도 최복 대신 白直領衣·黑草笠·黑條兒·백화를 사용하도록 했다.⁴⁹⁾

(2) 심상복 논의와 『국조오례의』 규정

소헌왕후상의 세자복제는 원경왕후상의 자취장기 제도를 토대로 졸곡변제와 심상삼년을 보완하여 삼년복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그런데 졸곡 이후, 심상삼년의 복색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진행되었다. 앞서 세자와 대군 등의 심상복을 천담복으로 결정했지만, 예조는 다시 詳定하여 아뢰었다. 祥祭부터 담제 전까지는 深染灰色衣와 오사모·흑각대를 착용하고, 담제부터 再期까지

47) 『세종실록』 권111, 세종 28년 3월 癸巳.

48) 『세종실록』 권111, 세종 28년 3월 乙未.

49) 『세종실록』 권111, 세종 28년 3월 甲午.

의 심상복으로 무양적색흑의와 오사모·흑각대를 착용하는 것으로 구분되었다.⁵⁰⁾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천담복을 착용하고 음악을 사용하는 것의 부조화에 있었다. 내상재선에서는 담제 후 의례에서 음악을 사용하기 때문에 천담복 착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卿이 또 아뢰기를, “동궁은 期年 후에 淺淡服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대저 淺淡이란 것은 무릇 靑·黃·赤·白·黑을 통틀어 말함이니, 淺淡黑色을 사용하기를 청합니다. 천담흑색은 곧 지금의 半雅靑色입니다. 이 색을 사용한다면, 期年 후 輝德殿에서 음악을 사용할 때에 동궁의 제사지내는 服色이 남의 시선을 놀라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니, 내가 이 말을 듣고 매우 옹계 여긴다. 그러나 갑자기 결정할 수 없으니 마땅히 다시 서로 의논해야 되겠다.⁵¹⁾

정인지는 세자의 천담복 착용을 주장하면서, 음악을 사용하는 의례에 합당한 천담복으로 천담흑색복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세자의 심상복은 무양적색흑의로 정해졌다. 이러한 결정은 심상삼년의 의미보다는 세자의 의례적 역할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처음 세자의 심상복을 천담복으로 정한 것은 世俗의 정리를 따른 것이었다.⁵²⁾ 세자의 심상복을 무양적색흑의로 결정한 이후에도 사대부의 부재위모 시 심상복은 계속 천담복이었다.⁵³⁾ 내상재선 시 세자는 혼전에서 사시제·삭망제 등의 공식적인 의례를 거행했고, 이에 합당한 복색으로 천담복보다는 깃하지만 완전한 길복은 아닌 무양적색흑의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는 천담복이 무양적색흑의로 변경되는 사실에 전혀 주목하지

50) 『세종실록』 권113, 세종 28년 8월 辛酉 “議政府據禮曹呈啓, 東宮及大君諸君心喪服色, 嘗以淺淡服受教. 今更詳定, 自祥至禫前, 著深染灰色衣·烏紗帽·黑角帶, 自禫至再期, 著無揚赤色黑衣·烏紗帽·黑角帶, 祥後禫前服色, 百官同.”

51) 『세종실록』 권113, 세종 28년 7월 壬辰.

52) 『세종실록』 권112, 세종 28년 6월 癸卯 “向者本國立法, 父在爲母期, 以吉服心喪三年. 此法雖據禮經, 而數十年間, 不以爲安, 皆痛恨也, 故近日因世俗之情, 令世子以淺淡服, 心喪三年.”

53) 『세종실록』 권123, 세종 31년 2월 丙子.

않았다. 세종 28년 3월에 28일에 결정된 천담복 사용을 “심상삼년의 의미가 올바르게 이해된 것”으로 인식했고, “『국조오례의』에 그대로 확립되고 조선 후기 예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⁵⁴⁾ 그러나 줄곡 후 8월 26일에 심상복은 천담복에서 무양적색흑의로 수정되었고, 이 내용이 『국조오례의』에 수록되었다.

조선후기에는 내상재선의 혼전에서 심상복으로 무양적색흑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숙종 대 인현왕후상에서는 무양적색흑의를 천담복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⁵⁵⁾ 반면, 내상재선의 담제 후에 음악을 쓰면서도 純吉하지 않은 無揚赤色黑團領을 입는 것이 모순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⁵⁶⁾ 18세기 『국조상례보편』에서는 세자의 심상복을 천담복의 형태인 淡黑袍로 변경하고 내상재선의 혼전에서 음악사용을 중단함으로써, 길흉의 부조화 문제를 해소했다.⁵⁷⁾

소헌왕후상의 세자복제는 『세종실록』 「오례」를 거쳐 『국조오례의』로 성문화되었다. 자취상복으로 성복하여 11월 연제 - 13월 상제 - 15월 담제에 따라 변제하고 심상삼년의 원칙에 따라 재기까지 무양적색흑의를 입는 것을 기본토대로 삼았다. 또한 줄곡변제를 적용하고 줄곡 전 진현복을 따로 규정한 것 역시 그대로 계승되었다. 단, 상제부터 담제까지의 복색인 심염회색의·오사모가 『세종실록』 「오례」에서는 심염옥색의·오사모, 『국조오례의』에서는 심염옥색의·익선관으로 변화되었다.

심염회색의에서 심염옥색의로의 변화는 祥祭에 입는 禪服의 黻袍를 심염옥색으로 규정하면서 일괄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참포는 세종 4년 원경왕후의 상제에서 담청흑색이었는데, 세종 6년 태종의 상제에서는 심염회색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소헌왕후상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⁵⁸⁾ 그런데 『세종실록』 「오례」에서는 ‘참’의 뜻은 담청흑색이지만, 조선에서는 심염옥색을 사용한다고

54) 지두환, 앞의 책, 234쪽; 정경희, 앞의 논문, 83~84쪽.

55) 『숙종실록』 35권, 숙종 27년 8월 己巳.

56) 『영조실록』 권91, 영조 34년 2월 癸未.

57) 김윤정, 앞의 논문, 2018(a), 73~76쪽.

58) 『세종실록』 권24, 세종 6년 4월 癸亥.

명시했다. 이에 따라 심염회색을 심염옥색으로 바꾸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⁵⁹⁾

오사모에서 익선관으로 변화는 세자가 명 황제에게 면복을 하사받은 이후 익선관을 쓰게 되면서 이루어졌다.⁶⁰⁾ 세종 30년 세자의 익선관 착용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익선관은 冕服을 입는 자만이 쓴다는 원칙에 따라, 명 황제에게 면복을 하사받지 못한 세자는 익선관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문종 즉위년에 세자가 면복을 하사받았고 이후 세자의 익선관 착용이 정례화 되면서,⁶¹⁾ 담복의 오사모가 익선관으로 변경된 것이었다.

15세기 『국조오례의』의 내상재선 시 세자복제는 원경왕후상의 자최장기복, 소헌왕후상의 줄곡변제와 심상복을 토대로 마련되었다. 『국조오례의』의 규정은 조선전기 고례와 주자 예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음을 보여주지만, 조선후기에는 새로운 예학적 비판에 직면하였다. 18세기에는 보편적 유훈을 리가 강조되면서, 세자는 심상복으로 무양적색흑의가 아닌 담흑포를 입었고 혼전예례에서는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 백관복제의 정비와 적용

백관의 상복은 『의례』에 규정된 왕의 부인인 小君을 위한 자최기년복을 원칙으로 했다. ‘자최기년복’으로 명명하지만 그 구현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일단 백관의 자최상복은 『가례』의 의·상, 수질, 요질 등을 갖춘 형태가 아닌 흰색 단령에 흰색으로 감싼 사모, 생마대 등을 착용하는 것이었다. 또한 역월제나 줄곡변제를 적용하여 최복을 벗고 백의·흑대 등으로 갈아입었으며, 진현복이 따로 규정되는 방식이었다.

59) 『세종실록』 권134, 『五禮·凶禮儀式·服制』 “二十五月祥祭, 黻袍 【禮部韻, 黻, 淺青黑, 本國深染玉色.】”: 단, ‘상제의’와 ‘담제의’ 항목의 백관복색의 경우는 그대로 심염회색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복제의’ 백관복에서 담복을 규정한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오류로 추정된다(『國朝五禮儀』 권7, 『凶禮·服制』 “宗親及文武百官, 斬衰三年, … 二十五月祥祭, 深染玉色衣·烏紗帽·黑角帶.”; 『國朝五禮儀』 권8, 『凶禮·祥祭儀』 “大君以下及宗親·文武百官, 俱易服. 【深染灰色圓領·烏紗帽·黑角帶·白皮靴】”; 『國朝五禮儀』 권8, 『凶禮·禫祭儀』 “宗親及文武百官, 具禫服. 【深染灰色圓領·烏紗帽·黑角帶·白皮靴】”).

60) 『문종실록』 권1, 문종 즉위년 5월 乙卯; 5월 庚申.

61) 『세종실록』 권120, 세종 30년 4월 己卯.

신덕왕후상에서 백관복은 자취기년을 원칙으로 했지만, 역월제를 적용하여 13일 만에 최복을 벗었다. 태조는 視事에 불편하다는 점을 들어 최복은 상례 절차에만 착용하도록 했고, 고려의 구례인 백일탈상제에 따라 상복을 벗어서 폐기했다. 따라서 1395년(태조 6) 1월 3일 장례를 치르고 혼전인 仁安殿으로 반우할 때 백관은 朝服을 갖추어 입었다. 이후 白衣와 黑帶를 착용한 것은 기년복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준다.⁶²⁾

정종비 정안왕후상에서 백관은 자취복으로 베로 짠 사모와 腰經을 갖추었다가 13일 만에 벗었고, 발인 시 백의·흑대, 반우 시에는 평상복을 착용했다.⁶³⁾ 원경왕후상에서 백관은 성복 시 大袖圓領·白布裏軟角紗帽·생마대·백화를 착용했다가 역월제를 적용하여 13일 만에 백의·오사모·흑각대로 바뀌 입고 산릉에 갈 때 다시 최복을 입었다. 오직 빈전도감과 殿內 집사들은 산릉에 갔다 온 후에 최복을 벗도록 했다. 이렇게 발인 시에 백관이 최복을 입은 것은 신덕왕후, 정안왕후 국상과의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세종이 장례를 마치고서도 줄곡까지 최복을 입겠다고 주장하면서, 백관들도 최복을 입고 반우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종은 백관들에게 흑립이 아닌 백립을 쓰도록 했으나 태종의 반대로 다시 흑립을 쓰게 되었다.⁶⁴⁾ 이후 연제 때의 복색은 확인되지 않고, 상제에는 세종과 동일하게 禪服을 입었다.⁶⁵⁾ 이후 왕과 백관 모두 淡靑色과 회색을 입었는데, 黑麻布의 淡土紅衣도 허용되었다.⁶⁶⁾ 백관은 자취기년복에 따라 13개월 상제 후 길복을 입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상제 후에도 담복을 입었으며 15개월 담제에 陪祭했다.

소헌왕후상에서 세종은 더 이상 태종의 허락을 구할 필요 없이, 백관복제에서 역월제를 폐지하고 줄곡변제를 적용했다.⁶⁷⁾ 줄곡 때 백의·오사모로

62) 『태조실록』 권10, 태조 5년 8월 己酉; 11월 丁丑;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1월 丙辰.

63)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6월 壬午; 『태종실록』 권24, 태종 12년 7월 癸卯.

64) 『세종실록』 권9, 세종 2년 9월 癸未.

65)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6월 辛亥.

66)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6월 丁巳.

67) 『세종실록』 권111, 세종 28년 3월 甲午.

갈아입고 기년을 마치는데, 喪事에 관계될 때는 최복을 입도록 했다. 이러한 방식은 태종국상에서 이루어진 삼년상의 졸곡변제를 기년상에도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백관들은 세자의 자취장기에 따라 연제-상제-담제에 배제하고, 이에 맞추어 變除하였다. 연제에 이르러서는 練布로 사모를 싸고 帶를 드리우며, 상제에서 담제에 이르기까지는 세자와 동일하게 심염희색의·오사모·흑각대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백관의 상복은 세자의 복제와 행례를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의례』의 소군복의 경우 연제와 담제 없이 13개월째인 상제에 상복을 벗고 吉服을 입는 것과는 차이가 컸다. 따라서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의 내상재선 시 백관의 복제에는 練服과 禪服의 규정이 삭제되었다. 구체적으로 내상재선 시 ‘祥祭儀’에서 백관은 제사에 배제한 후 吉복으로 갈아입었고, 상복을 벗은 후인 담제에는 배제하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성종 대 논의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성종은 『국조오례의』와 달리, 소헌왕후상에서 백관들이 담제에 배제한 이유에 대해 하문했다. 신숙주의 설명에 따르면, 세종 때 정인지가 예조판서로 있으면서 처음에는 예문을 참고하지 않고 담제가 있다고 아뢰었다가 뒤에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다시 아뢰었다. 그럼에도 세종은 세자였던 문종이 國事를 署理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후의 상례를 적용하여, 백관이 權道로 담제에 배제하게 했다는 것이다.⁶⁸⁾ 결국 소헌왕후상에서는 세자의 정치적 역할을 고려하여 백관들이 특별히 담제에 배제했던 것이므로,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에는 당연히 이 규정이 제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조오례의』의 내상재선 시 백관복제는 내상과의 차등을 명확히 규정하였다(표 3). 내상과 내상재선은 백관의 입장에서는 모두 소군상으로, 자취기년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내상의 경우, 백관들은 왕의 의례에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13개월 연제 때 백관은 최복을 입고 배제한 후 禫담복으로 갈아입었고, 다음날 吉복을 입는 것으로 상복을 마쳤다. 그러나

68) 『세종실록』 권54, 성종 6년 4월 庚辰.

25개월의 상제 때 다시 천담복을 입고 배제했고, 27개월의 담제 때는 길복을 입고 배제했다. 반면 내상재선에서 백관은 11개월 연제 때 최복을 입었고 13개월 상제 때는 최복을 입고 배제한 후 길복으로 같이입었다. 이후 담제에는 배제하지 않았다. 내상재선의 주상은 세자로 간주되었으므로, 백관복은 세자와 백관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표 3] 『국조오례의』 내상과 내상재선 시 백관의 복색과 배제

	성복	졸곡변제	연제[後](13/11)	상제(25/13)	담제(27/15)
내상	자최기년(최복)	백의	최복 - 천담복[길복]	천담복[길복]	길복
내상재선	자최기년(최복)	백의	최복	최복 - 길복	×

(/)은 (내상/내상재선)의 기간임. []은 제사 후의 복색

공혜왕후상에서는 『국조오례의』에 따라 백관의 상복이 규정되었다. 처음에는 소헌왕후상의 의주를 참고하여, 백관이 자최복을 입고 11월 연제 - 13월 상제 - 15월 담제에 따라 變除하도록 하였다.⁶⁹⁾ 소헌왕후상에서는 세자복과 백관복을 연동시킨 것이었지만, 세자없는 내상재선인 공혜왕후상에서는 세자를 대신해서 백관들이 연제 - 상제 - 담제를 담당하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상제를 앞두고 소헌왕후상의 의주와 『국조오례의』 간의 차이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성종은 예문관으로 하여금 옛 제도를 고찰하게 하고, 대신들의 논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정인지 등은 “왕후를 위하여 禪服을 입었다는 글이 없고, 『국조오례의』는 세종 때에 옛 글을 널리 채택하고 참작해서 정한 것이니,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국조오례의』를 따르는 것으로 결정되었다.⁷⁰⁾

백관의 복제는 그들의 음악사용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국조오례의』에 따르면 종친과 문무백관은 13개월이면 상을 마치고, 소헌왕후상과 공

69) 성종실록 41권, 성종 5년 4월 庚午; 실록 원문에는 ‘十月而練’으로 되어 있지만, 10개월에 연제를 지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오류로 간주된다.

70) 『성종실록』 권53, 성종 6년 3월 丙子.

혜왕후상의 의주에서 ‘기년 후 京外의 사용’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기년 후 음악사용이 가능했다. 반면, 소헌왕후상과 공혜왕후상의 의주에서 “종친과 문무백관은 상제부터 담제까지 천담복을 착용하도록 했다.”에 따를 경우, 천담복을 입고서 음악을 쓰는 이치는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혼전에서는 담제 뒤에 비로소 음악을 쓰는데 아랫사람이 먼저 음악을 쓰는 것은 미안하다는 점에서, 백관도 담제 후 음악을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다.⁷¹⁾

홍문관 부제학 李符 등은 『국조오례의』가 고례인 『의례』에 따라 소군에 대한 백관의 기년복을 규정했고, 이것은 성인이 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이 다하자마자 문득 음악을 쓰는 것은 미안한 듯하나 소군의 상에는 연제도 없고 담제도 없어서 점차로 낮추지 않으니, 이는 성인이 제정한 것으로 신하의 미안한 마음에 따라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祥祭를 지낸 뒤에도 혼전에서 음악을 쓰지 않는 것은 왕세자가 아직 담제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자의 담제에는 백관이 陪祭한다는 글이 없으니, 복은 상제 때에 다하는 것입니다. 만약 혼전에서 아직 음악을 쓰지 않는데도 朝野에서 음악을 쓰는 것이 미안하다 한다면, 혼전에서 길례를 쓰지 않고 세자가 길복을 입지 않는데도 백관이 먼저 길복을 입는 것만은 또한 어찌 편안하겠습니까? 참으로 예를 지나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⁷²⁾

백관은 기년복을 입기 때문에, 기년 후 음악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혼전에서의 음악사용은 세자의 담제와 연관된 것이므로, 담제에 배제하지 않는 백관과는 무관한 문제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내상과의 차이를 전제한 것이었다. 내상 시에는 왕이 담제를 주재하기 때문에 백관이 배제하고, 음악사용 역시 불가능했다. 그러나 내상재선의 담제는 세자가 주관하고 백관은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음악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식한 것이었다.

반면, 鄭光弼 등은 기년이면 신하들은 복을 벗지만 서둘러 음악을 쓸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禮文에 비록 기년상에는 담제가 없다고 하였지만

71) 『중종실록』 권23, 중종 11년 1월 乙未.

72) 『중종실록』 권23, 중종 11년 1월 乙巳.

지금은 담제가 있으니, 담제를 지내지 않고서 군신이 먼저 음악을 쓰는 것은 정리에 미안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申用漑는 왕후의 상에 담제를 지내지 않고서 신하들이 음악을 쓰는 것은 정리 상 미안하나, 신하들이 祥祭 후 복을 마치고 吉服을 입었으면 음악을 쓰는 것이 예에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중종은 신용개의 의견에 따라 기년 후 신하들의 음악사용을 허가했다.⁷³⁾

『국조오례의』의 내상재선 시 백관복제는 소헌왕후상에서의 결정에 따라 역월제가 아닌 졸곡변제를 적용하는 13개월 기년복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소헌왕후상의 백관복제와 달리, 백관은 기년복을 마친 후 길복을 입었고 담제에는 배제하지 않았다. 이러한 규정은 내상과 내상재선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왕비를 위한 백관의 상복은 모두 기년이지만, 백관은 왕이 주관하는 내상에는 배제할 의무가 있었다. 반면 세자가 주관하는 내상재선의 경우, 백관은 기년복을 마친 후에 배제하지 않았고 음악을 사용할 수 있었다.

4. 맺음말

『국조오례의』의 내상재선 의례는 세자의 부재위모복인 자취장기를 기준으로 거행되었다. 『국조오례의』에는 왕의 복제와 행례에 대한 규정이 없었지만, 아버지이자 국왕이라는 尊者의 위상은 내상재선 의례에 중요한 전제가 되었다. 왕은 공식적으로 상례 절차를 결정했고, 왕의 ‘服盡’을 기준으로 백관과 내시 등의 상복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었다. 또한 세자가 주관하는 혼전의례에서 왕과 세자의 의례적 조율이 강조되었다. 왕의 존재는 내상재선의 차등적 규정을 생산하는 기준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상재선의 主喪은 세자로 간주되었다.

내상재선의 혼전의례는 主喪인 세자의 복제에 따라 연제-상제-담제-

73) 『중종실록』 권23, 중종 11년 1월 乙巳.

재기의 절차를 거치면서, 흥례에서 길례로 변화되었다. 15개월 담제 후 내상 재선의 혼전은 음복과 음악이 허용되는 길례의 공간이었지만, 심상삼년을 행하는 세자의 존재로 인해 재기까지는 흥례의 의미가 유지되었다. 재기 이후 부터는 祔廟를 기다리는 온전한 길례의 공간으로 간주되었다. 한편, 세자없는 내상재선의 혼전의례는 세자의 행례와 무관하게 자취장기를 원칙으로 운영되었다. 그럼에도 세자의 부재로 인해, 담제 이후의 혼전은 길례의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국조오례의』 내상재선 의례의 기준이 되었던 세자의 복제는, 원경왕후상의 자취장기복, 소헌왕후상의 줄곡변제와 심상복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었다. 이러한 세자복제는 조선전기 고례와 주자 예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음을 보여주지만, 조선후기에는 새로운 예학적 비판에 직면했다. 18세기에는 보편적 유교윤리인 효를 바탕으로 세자의 心喪이 강조되면서, 세자의 無揚赤色黑衣는 淡黑袍로 변경되었고 혼전의례에서의 음악사용은 중단되었다.

또한 『국조오례의』의 내상재선 시 백관복제는 역월제가 아닌 줄곡변제를 적용하는 13개월 기년복으로 결정되었다. 소헌왕후상의 백관복제와 달리, 백관은 기년복을 마친 후 길복을 입었고, 담제에는 배제하지 않았다. 이러한 규정은 내상과 내상재선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백관의 왕비복은 모두 기년복이지만, 백관은 기년 후에도 왕이 주관하는 내상 의례에 배제했다. 반면 세자가 주관하는 내상재선의 경우, 백관은 기년복을 마친 후에 배제하지 않았고 음악을 사용할 수 있었다.

『국조오례의』의 내상재선은 세자의 부모위모상으로 간주되었고, 내상재선에서 왕의 의례적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백관의 의례 역시 세자가 주재하는 내상재선과 왕이 주재하는 내상에 대해 차등적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왕이 내상재선에서 자취장기복을 입게 되면서, 왕이 주재하는 처상의 의미가 강조되었고 왕의 의례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조오례의』의 내상재선 규정이 조선후기에 대폭 수정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 참고문헌

『國朝五禮儀』 『儀禮注疏』 『禮記集說』

『태조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문종실록』 『성종실록』 『중종실록』 『숙종실록』 『영조실록』

이 옥, 『조선왕실의 제향공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지두환, 『朝鮮前期 儀禮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김윤정, 『宣祖代 懿仁王后 國恤의 성격과 의미』, 『규장각』 50,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17.

_____, 『英祖代 貞聖王后 國恤의 성격과 의미』, 『서울과 역사』 98, 서울역사편찬원, 2018(a).

_____, 『인조대 인열왕후 국휼의 절차와 의미』, 『장서각』 40,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b).

_____, 『조선후기 內喪在先 의례의 변화와 의미 - 仁敬王后 國恤을 중심으로 -』 『규장각』 53, 규장각한국학 연구소, 2018(c).

석창진, 『조선 世宗妃 昭憲王后 國喪儀禮와 그 의미』, 『역사민속학』 45, 한국역사민속학회, 2014.

안희재, 『朝鮮時代 國喪儀禮 研究: 國王國葬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논문, 2010.

양정현, 『조선 초기 원경왕후 喪葬禮 의식과 그 특징』, 『역사민속학』 45, 한국역사민속학회, 2014.

이지훈, 『조선 세종 국상의 의식 구성과 진행』, 『역사민속학』 45, 한국역사민속학회, 2014.

정경희, 『朝鮮前期 禮制·禮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0.

조용철, 『朝鮮 世祖代 懿敬世子 喪葬禮 구성과 특징』, 『역사민속학』 45, 한국역사민속학회, 2014.

The Character and Significance of Queen's funeral rites earlier than king's in *Kukchooryei*

Kim Yun-jung*

Queen's funeral rites earlier than king's in *Kukchooryei* were defined mother's funeral earlier than father's of the crown prince. Queen's funeral rites earlier than king's without the crown prince were applied to emphasize the nature of mother's funeral earlier than father's. The presence of a esteemed person served as an important precondition for Queen's funeral rites earlier than king's even though the mourning and ceremonial rites of the husband, the king, were not included.

Through the process of Yeonje(11th month) – Sangje(13th month) – Damje(15th month) – Jaeki(second year) according to the Mourning of the crown prince, it shows the change from the sadness to worship. After Damje, Honjeon of Queen's funeral earlier than king's was a place of worship where music was allowed. But Honjeon was a place of sadness for the presence of the crown prince kept mourning in Heart until second year of death.

In *Kukchooryei*, the mourning of the crown prince was built on the basis of Queen Wongyeong's 1years mourning with stick and Queen Soheon's changing in Jolgoek and Mourning in Heart. Although the regulations of *Kukchooryei* showed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ancient rites of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the study of runners-up, it later faced another ritual criticism. In the 18th century, with the emphasis on universal Confucian ethics,

* Research Professor of Yonsei Univ.

the crown prince was changed to wearing a chundam-cloth and not using music in Honjeon.

Key words: Kukchooryei, Queen's funeral earlier than king's, Honjeon, mourning system, Mourning in Heart.